

제329회 임시회  
2014. 4. 8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14일

3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4조)

○ 영 제79조제1항 → 영 제79조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개정('11.3.29.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법 제82조에는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하도록 되어 있음.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79조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도 조례 제14조에서 ‘과태료의 부과 기준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간 상충되는 내용없이 간결하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가. 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.

나. 다만, 현행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에서 ‘과태료의 부과기준’을 ‘별표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, 제2항을\* 삭제한 사항과

다. 현행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 조항 또한 상위법령에서 개정되었으므로, 법령의 조문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.

---

\* 주요 삭제내용: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  
⇒ 개정된 ‘과태료의 부과기준’에는 일반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함